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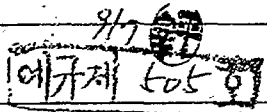
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시민 01238- <u>내부</u> (전화: 3001)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 <u>준영구</u> 10.5.3.1.	시 장	
수신처 보존기간	1년		
시행일자	88.9.		
보조 기간	내부국장: <u>내부</u>	법무담당관	문서통제 
	시민과장: <u>시민</u>		
	문서관리부장: <u>문서</u>		
기안책임자	김 일 용	협조 기관	발 송 인 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조	발신 명의	시 장
제 목	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규정 개정		
(제1안)			
수신 :	내부결재 		
제 목 :	같은건		
1.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			
가. 기구신설내역			
부 서 명	구 분	관 계 법 규 및 근거	
환경녹치국·건강생활과	신 설	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관한 규정중 88.7.26 개정령 (대통령령제12496호)	
		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'88.8.19 (규칙제2259호)	

교통관리사업소	신 설	'88.8.19 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설치조례 (조례제2377호)
---------	-----	---

2.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규정 개정내용

○ 신설부서의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부여

부 서 명	기 관 기 호	수 신 처 번 호	비 고
건 전 생 활 과	건 생	서과57	
교통관리사업소	교 관	서사40	

3. 개 정 안 : 별첨

첨 부 : 서울특별시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규정개정(안) 1부. 글.

(제2안)

수 신 : 공보관 발 신 : 시민과장

제 목 : 시보게재의뢰

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

번호가 별첨과 같이 개정되었기 시보게재 의뢰합니다.

첨 부 :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규정개정 1부. 끝.

(제3안)

수 신 : 수신처참조

제 목 : 신설부서 기관기호 부여

1. 서울특별시의 구직제개정(대통령령 제2,413호)으로 구에 건전

생활과가 신설됨에 따라 정부공문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기호를

부여해야 하는바,

2. 각 구청장은 아래 본청 기관기호에 준하여 이를 지정, 동일

명칭 부서의 기관기호가 통일될수 있도록 할 것.

아 래

과	기 관 기 호
건 전 생 활 과	건 생

끝.

수신지 : 서구 1-22

서울특별시예규제 ⁵⁰⁵호

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번호규정중개정규정(안)

서울특별시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본청과 사업소의 기관명, 기관기호, 수신처번호 및 비고란을 별지와

같이 한다.

부

칙

이 규정은 1988.8.19 부터 적용한다.

<별표>

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

=====

기관명	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고			
시	장	실	서실 01	서실 01-02			
부	시	장	실	서실 02			
기	획	관	리	실	서기 01	서기 01	
올	림	픽	큰	비	단	서단 01	서단 01
공	보	관	관	관	사	서관 01	서관 01-02
감	사	관	관	관	서관 02	서관 02	서관 01-02
내	무	무	국	국	국	서국 01	서국 01-13
제	무	무	국	국	국	" 02	
보	건	사	회	지	국	" 03	
가	정	복	지	국	국	" 04	
산	업	경	제	국	국	" 05	
도	시	계	회	국	국	" 06	
건	설	관	리	국	국	" 07	
환	경	속	지	국	국	" 08	
교	통	통	국	국	국	" 09	
상	하	수	국	국	국	" 10	
민	방	위	국	국	국	" 11	
경	찰	국	국	국	국	" 12	
소	방	분	국	국	국	" 13	
기	기	담	관	관	관	서과 01	서과 01-84
획	심	분	담	담	관	" 02	
관	사	석	담	담	관	" 03	
리	예	산	담	담	관	" 04	
실	투	자	관	담	관	" 04	

기 관 명	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 고
기획 관리 실	시정개발 담당관	시 정	서 과 05	
	법 무 담 당 관	법 무	" 06	
	통 계 담 당 관	통 계	" 07	
	전 산 담 당 관	전 산	" 08	
	기술심사 담당관	기 심	" 09	
올림 픽 준 비 단	올림픽 기획담당관	올 기	" 10	
	올림픽 관리담당관	올 관	" 11	
	관 광 담 당 관	관 광	" 12	
	문 화 담 당 관	문 화	" 13	
	올림픽 건축담당관	올 건	" 14	
	올림픽 토목담당관	올 토	" 15	
	올림픽 설비담당관	올 설	" 16	
감사 관	감 사 담 당 관	감 사	" 17	
	조 사 담 당 관	조 사	" 18	
	사회지도 담당관	지 도	" 19	
내 무 국	총 무 과	총 무	" 20	
	의 전 과	의 전	" 21	
	인 사 과	인 사	" 22	
	행 정 과	행 정	" 23	
	시 민 과	시 민	" 24	
	새마을 지도과	새 지	" 25	
재 무 국	회 계 과	회 계	" 26	
	세 정 과	세 정	" 27	
	세 무 지 도 과	세 무 지 도	" 28	
	관 재 과	관 재	" 29	

기 관 명	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 고
보건사회국	보건 위생과	보 위	서 과 30	
	의 약 과	의 약	" 31	
	사 회 과	사 회	" 32	
	보 험 연 금 과	보 험	" 33	
가정복지국	가정 복지과	가 정	" 34	
	부녀 복지과	부 녀	" 35	
	청 소 년 과	청 년	" 36	
산업경제국	상 공 과	상 공	" 37	
	연 료 과	연 료	" 38	
	가 스 과	가 스	" 39	
	농 축 과	농 축	" 40	
	양 정 과	양 정	" 41	
	물 가 지 도 과	물 가	" 42	
도시계획국	도시 계획과	도 시	" 43	
	시설 계획과	도 시	" 44	
	도시 개발과	도 시	" 45	
	재 개발과	도 시	" 46	
	지 적 과	지 적	" 47	
건설관리국	건설 행정과	건 행	" 48	
	도로 과	도 로	" 49	
	건축 지도과	건 지	" 50	
	주택 기획과	주 지	" 51	
주택 개	주 개	" 52		

기 관 명	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 고
환경 녹지 지국	청 소 과	청 소	서 과 53	
	환 경 과	환 경	" 54	
	공 원 과	공 원	" 55	
	녹 지 과	녹 지	" 56	
	건 전 생 활 과	건 전 생	" 57	
교 통 국	교 통 기 획 과	교 기	" 58	
	운 수 1 과	운 일	" 59	
	운 수 2 과	운 이	" 60	
상 하 수 국	업 무 과	업 무	" 61	
	급 수 과	급 수	" 62	
	수 원 기 전 과	수 전	" 63	
	하 수 과	하 수	" 64	
	치 수 과	치 수	" 65	
민 방 위 국	민 방 위 과	민 방	" 66	
	운 영 과	운 영	" 67	
	비 상 계 획 과	비 상	" 68	
증 합 민 원 실		증 민	" 69	
소 방 본 부	소 방 행 정 과	소 방	" 70	
	방 호 과	방 호	" 71	
	지 도 과	지 도	" 72	
경 찰 국	경 무 과	경 무	" 73	
	면 허 과	면 허	" 74	
	통 신 과	통 신	" 75	
	교 통 과	교 통	" 76	

기 관 명		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 고
경 찰 국	경 비 과	경 비	서 과	77	
	작 전 과	작 전	"	78	
	보 안 과	보 안	"	79	
	수 사 과	수 사	"	80	
	형 사 과	형 사	"	81	
	정 보 과	정 보	"	82	
	대 공 과	대 공	"	83	
	외 사 과	외 사	"	84	

기 관 명	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 고
기 획 관리실	서울시립 대학교	시대	서사 01	서사 01-60
	전자 계산 소	전자	" 02	
올림픽 준비단	종합 운동장 관리 사업소	종합	" 03	
	서울 특별 시립 운동장	운동	" 04	
	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	세종	" 05	
내무국	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	교육	" 06	
보 건 사회국	보건 환경 연구 원	보환	" 07	
	동 부 병 원	동병	" 08	
	아 동 병 원	아병	" 09	
	정 신 병 원	정병	" 10	
	서 대 문 병 원	서병	" 11	
	근 로 자 회 관	근로	" 12	
	긴급 구명 안내 센터	긴급	" 13	
가 정 복지국	구로부녀 복지관	구부	" 14	
	마포부녀 복지관	마부	" 15	
	남부근로 청소년 회 관	남근	" 16	
	동부근로 청소년 회 관	동근	" 17	
	부녀 보호 소	부보	" 18	
	아동 상담 소	아상	" 19	
	청소년 사업 관	청사	" 20	
산 업 경제국	서울특별시 농촌지도 소	농지	" 21	
	공업 시험 소	공시	" 22	
도 시 계획국	목동 지구 개발 사업소	개발	" 23	
건 설 관리국	종합 건설 본 부	종합	" 24	
	건설 자재 시험 소	건시	" 25	
	건설 자재 사업 소	건자	" 26	
	동부 건설 사업 소	동건	" 27	

기 관 명	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 고
건설기획국	서 부 건 설 사 업 소	서건	서사 28	
	남 부 건 설 사 업 소	남건	" 29	
	북 부 건 설 사 업 소	북건	" 30	
환경녹지국	서 부 위 생 처 리 장	서위	" 31	
	북 부 위 생 처 리 장	북위	" 32	
	녹 지 사 업 소	녹사	" 33	
	남산 공원 관리 사업소	남공	" 34	
	서울 대공원관리사업소	서공	" 35	
	난지도 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	난쓰	" 36	
	보라매 공원관리사무소	보공	" 37	
교통국	자동차 관리 사업 소	자관	" 38	
	차 량 정 비 사 업 소	차정	" 39	
	교 통 관 리 사 업 소	교관	" 40	
상하수국	한 강 관 리 사 업 소	한관	" 41	
	북부 수도관리 사업 소	북관	" 42	
	남부 수도관리 사업 소	남관	" 43	
	팔당 수원지 사무소	팔수	" 44	
	구의 수원지 사무소	구수	" 45	
	뚝도 수원지 사무소	뚝수	" 46	
	보광동 수원지 사무소	보수	" 47	
	노량진 수원지 사무소	노수	" 48	
	영등포 수원지 사무소	영수	" 49	
	선유 수원지 사무소	선수	" 50	
	김포 수원지 사무소	김수	" 51	
	암사 수원지 사무소	암수	" 52	
	대현산 배수지 사무소	대배	" 53	
	만리동 배수지 사무소	만배	" 54	
청담 배수지 사무소	청배	" 55		
우면산 배수지 사무소	우배	" 56		

기 관 명		기관기호	수신처번호	비 고
민방위국	민 반 공 경 보 통 제 소	경보	서사 57	
소방본부	소 방 학 교	소학	" 58	
	항 공 대	항공	" 59	
	청 와 대 소 방 대	청대	" 60	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◇서울特別市의區職制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

전진현 市民生活를 위하여 심의 質을 높이고 文化生活를 豊穡히는 健全社會를 造成하고자 이에 相宜 業務를 담당하기 위하여 都市整備局에 健全生活課 (地方 5級)를 新設함. <별첨처 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노태우 國

1988년 7월 26일

국무총리 이 현 재

국무위원 총무처장관 김 용 갑

◎대통령령 제 12,496호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규정중개정령

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제 4 항제 6 호중 "진호일 및 조진일"을 "진호시 및 조진시"로 한다.

제 12 조제 1 항중 "공민과 및 녹지과"를 "공민과·녹지과 및 진전생활과"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◇서울特別市行政機構에 관한規程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

전진현 市民生活를 위하여 심의 質을 높이고 文化生活를 豊穡히는 健全社會를 造成하고자 이에 相宜 業務를 담당하기 위하여 都市整備局에 健全生活課 (4級)를 新設함. <별첨처 개공>

- (7)진전생활과는 다음 직제를 분정한다.
1. 진전생활전용에관한 총괄계의 수립 및 시행
 2. 진전생활관련시설(공원화 및 녹지화 진전시설을 제외한다)의 계획·설치 및 지도
 3. 진전생활관련프로그램의 개발·모집 및 지도
 4. 진전생활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
 5. 기타 진전생활전용에관한 사항

규 칙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8년 8월 19일
서울특별시청 김 용 래

◎서울특별시규칙 제 2259 호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 46 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제 46 조의 3 (건전생활과) ①건전생활
과에 전홍계, 개발계 및 시설계를
두고 전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
개발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
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, 시설
계장은 지방임업기차 또는 지방건축
기차로 보한다.

②건전생활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
음 각호와 같다.

- 1. 전홍계
 - 가. 여가생활전홍에 관한 종합계획
수립 및 시행
 - 나. 사회체육 전홍에 관한 종합조
정 및 시행
 - 다. 기타 과내 다른계의 우선에
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- 2. 개발계
 - 가. 여가생활관련 프로그램의 개발

- 및 보급
- 나. 여가생활 지도 및 지원
- 다. 여가생활지도자의 육성
- 3. 시설계
 - 가. 여가생활관련시설 (공원과 및
녹지과관장시설제외) 의 개발계획
수립 및 지도
 - 나. 체육관련시설의 설치 및 유
기관리
 - 다. 레크리에이션, 레저 관련시설
의 설치 및 유지관리
 - 라. 기타 여가생활관련시설에 관
한 사항

제 82 조 제 2 항 4 호를 다음과 같이
한다.

- 4. 체육진흥계
 - 가. 경기용지의 표준화설정 및 과
중경거 단재기도
 - 나. 산수육성관리, 선발기술에 관
한 사항

다. 올림픽관련 체육시설 권리업
무 종합조정
러, 서울특별시 체육회 운영
제 83 조 제 2 항 제 3 호를 다음과
“시립”을 “올림픽”으로 한다.

부 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된다.

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8년 8월 19일
서울특별시청 김 용 래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377 호

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설치조례

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 (설치) 이 조례는 서울시 교통문제의 개선대책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 및 조사·연구등 교통관리기능을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청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통관리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 (소장) ①사업소에 소장 1인을 두고, 소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행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 4 조 (하부조직) ①소장 밑에 관리과, 개발실 및 조사실을 두고 관리과에 사무계 및 운영계를 둔다.

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③관리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과 호와 같다.

1. 사무계

- 가. 문서, 보안 및 관인관수
- 나. 인사, 급여, 복무 및 직원후생
- 다. 예산, 회계 및 물품관리

리. 기타 소내 다른 계·실의 주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운영계

가. 교통정책개발 및 교통정책연구에 관한 사항

나. 교통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다. 교통체계개선(T·S·M)

및 교통안전대책 연구개발사업 개발실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교통정책개발
 - 2. 중장기 교통정책연구
 - 3. 분야별 교통정책연구
 - 4. 교통체계개선(S·T·M)연구
- (5) 조사실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

- 1. 교통현황 조사
- 2. 각종교통저해요인 조사개선
- 3. 지역별 교통소통 현황조사 및 개선
- 4. 교통 안전대책

제 6 조 (직무대행) 소장의 직무를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교통관리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

직 급	정 원	정 원 내 용
3 급	1	행정직 1
5 급	1	행정직 1
6 급	4	행정직 4
7 급	3	행정직 3
고용직	1	타자원 1
합 계	10	

“전산개발제”를 “전산개발과”로 한다.
 제 6 조 중 “전산운영제장”을 “전산운영과장”으로 한다.
 (별표) 전산계산소 지방공무원정원표 4급 정원란위에 3급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직급	정원	정원내용
3급	1	행정직 1

5급정원내용 “행정직 3”을 “행정직 1, 행정 또는 별정직 2”로 한다.
 별정직 정원내용중 6급상당 “13”을 “15”로 하고, “전산기계기사 1” 및 “전산전기기사 1”을 각각 신설하며 7급상당 “8”을 “6”으로 하고 “전산기계기사 1” 및 “전산전기기사 1”을 각각 삭제하며 합계정원 “84”를 “85”로 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8년 8월 19일

서울특별시장 김근태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2375 호

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설치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설치조례중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소”를 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 1 조 중 “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소”를 “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”으로 하고 “연구소”를 “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 2 조 중 “연구소”를 “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 3 조의 제목 “소장”을 “원장”으로 하고 동조중 “연구소”를 “연구원”으로 “소장”을 “원장”으로 한다.

제 4 조 중 “연구소”를 “연구원”으로 한다.

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5 조 (하부조직) ①원장 밑에 서무과, 미생물부, 약품부, 식품부, 환경부 및 축산물부 둘을 둔다.

②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미생물부장, 약품부장, 식품부장 및 환경부장은 지방보건연구원, 지방공업연구원,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, 축산물부장은 지방축산기정 또는 4급 지방수의관으로 보한다.

③각부에 평년구관 1인을 두고 평년구관은 지방보건연구원으로 보한다.

제 7 조 내지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10 조를 제 12 조로 하며 제 10 조 및 제 12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7 조 (미생물부) ①미생물부에 조사지도과, 세균과, 병독과를 두고, 과장은 지방보건연구원으로 보한다.

②조사지도과는 각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, 보균자 색출검사 및